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59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추미애 • 이건태

안태준 · 송옥주 · 진성준

이병진 · 임미애 · 주철현

김태선 · 김 현 · 김윤덕

김정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,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 하고 있음.

하지만,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 · 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,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,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, 폭염·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제39조제1항제2호 중 "유해광선·고온·저온·초음파"를 "유해광선· 초음파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조명·보온·방습·청결"을 "조명 ·청결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폭염,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9조(보건조치) ① 사업주는 다	제39조(보건조치) ①	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			
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"보건			
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방사선 · <u>유해광선 · 고온 · 저</u>	2 <u>유해광선·초음파</u>		
<u>온·초음파</u> ·소음·진동·이			
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		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		
6. 환기·채광· <u>조명·보온·방</u>	6 <u>조명·청결</u>		
<u>습·청결</u> 등의 적정기준을 유			
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			
강장해			
<u><신 설></u>	<u>7. 폭염, 혹한 및 다습 등의 기</u>		
	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		
	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		
	<u>장해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